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학술진흥재단  
KOREA RESEARCH FOUNDATION

2009년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 - 기반연구  
**「명저번역지원」** 신청요강

2009. 2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주요사항 신규대비표

구분	2008년	2009년	비고
1. 지원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액 : 1,900백만원(50과제)</li> <li>- 신규 : 829백만원(35과제)</li> <li>- 계 속 : 538백만원(15과제)</li> <li>※ <u>다년과제는 신규과제 지원비의 50% 이내로 선정</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액 : 2,400백만원(70과제 내외)</li> <li>- 신규 : 1,126백만원(40과제 내외)</li> <li>- 계 속 : 674백만원(30과제)</li> <li>※ <u>다년과제 선정비율 제한 폐지</u></li> </ul>	출판비 및 번역권체결비 포함
2. 연구비 지급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번역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출판적격 과제에 연구비 잔액 지급</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출판사의 최종 교정 완료 후 연구자에게 연구비 잔액 지급</u></li> </ul>	
3. 출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양서 <u>각 1개 지정출판사 일괄 출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양서 <u>각 2개 출판사 지정, 연구자가 선택 출판</u></li> </ul>	
4. 지정도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중단 과제 도서 재공모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중간·결과보고서 평가결과 <u>지원중단 과제 도서 재공모</u></li> </ul>	
5.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과제</li> <li>- <u>3월 공고/9~10월 심사/11월 선정 및 지원</u></li> <li>○ 계속 과제</li> <li>- <u>6~7월 보고서 접수/8~9월 중간평가/10월 결과통보 및 지원</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과제</li> <li>- <u>2월 공고/7~9월 심사/10월 선정 및 지원</u></li> <li>○ 계속 과제</li> <li>- <u>6~8월 보고서 접수/9~10월 중간평가/11월 결과통보 및 지원</u></li> </ul>	



# 차 례

## I.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 사업목적 ..... 1
- 지원방향 ..... 1

## II. 지원 내용

- 지원예산 ..... 1
- 지원대상 ..... 1
- 지원형태 ..... 2
- 지원규모 ..... 2

## III. 신청방법

- 신청자격 ..... 2
- 신청기간 ..... 3
- 신청절차 ..... 3
- 신청 및 참여 제한 ..... 6

## IV. 심사 및 선정

- 심사단계 ..... 8
- 심사절차 및 내용 ..... 8
-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9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 지급 ..... 9
- 연구비 관리 ..... 10

##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1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12
- 연구결과물 제출 및 출판 ..... 13
- 연구성과 관리 ..... 13

## VII.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 14
- 기타 참고사항 ..... 14

**[붙임 1]**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 16

**[붙임 2~6]** 2009년 명저번역지원 번역연구계획서 양식 ..... 17~22

**[붙임 7]** 2009년 명저번역지원 FAQ ..... 23~25

# I.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 ● 사업목적

- 학문의 기초이론과 선현들의 사상 등이 담긴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하여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마련함
-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을 통해 번역도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상세한 역주(譯註)를 통해 학술번역의 전범을 수립함

## ● 지원방향

- 조사·검토를 통해 번역대상도서(Top-Down)를 확정하고 확정된 도서에 한하여 공모 및 지원
  - ※ 기존에 중간·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지원중단된 과제를 지정도서 목록에 재포함함. 단, 해당 과제의 기 수행자는(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신규로 재신청할 수 없음.
- 번역연구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비의 자율 신청으로 우수 결과물의 창출 유도
- 명저번역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 운영의 합목적성 제고

# II. 지원 내용

## ● 지원예산

- 지원비 : 총 2,400백만원 (도서출판비 및 번역권 체결비 포함)
  - 신규지원 : 1,126백만원 (40과제 내외)

## ● 지원대상

- 지원분야 : 기초학문분야의 학술명저에 대한 한글번역
  - ※ 단, 우리 고전은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서 지원함
  - ※ 지정도서(300종 내외) 목록은 조사·검토를 거쳐 별도 공고

- 지원형태 : 단독 또는 공동연구
  - 번역연구자의 문헌해제, 역자주 반드시 포함
  - 원전에 의한 직접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역본을 통한 보완 인정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자율신청
    - ※ 번역과제의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신청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12,000원)
  - 지원기간 : 1 ~ 2년
- 연구개시일 : 10월 1일

### Ⅲ. 신청방법

- 신청자격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 단, 연구책임자는 국내 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5조**

제 5 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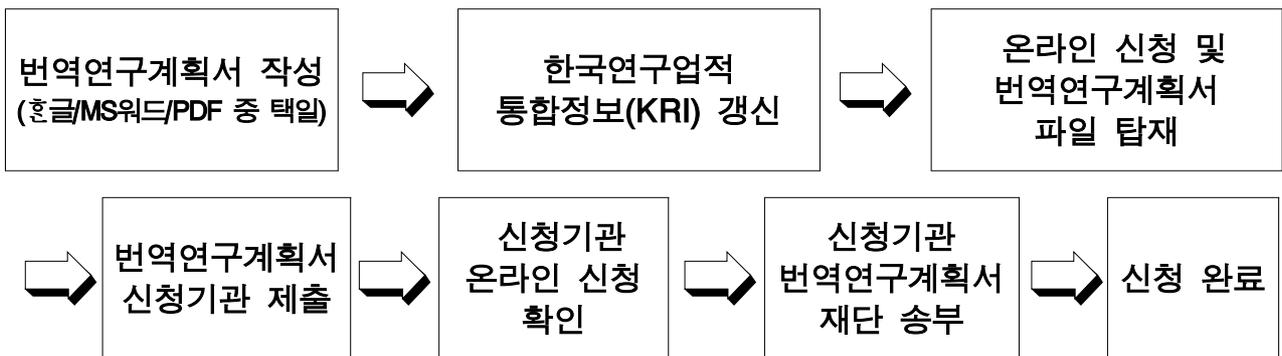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 단독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또는
  - 4인 이하의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이고 2004년 1월 1일 이후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SCI급(A&HCI, S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 단, 예외적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연구자(시간강사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등)는 번역업적이 없을 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해 상기의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함
-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09. 7. 1(수) 14:00 ~ 7. 15(수) 18:00까지
- 기관 확인 : 2009. 7. 16(목) 14:00 ~ 7. 17(금) 18:00까지

##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절차)



### 가. 온라인 신청 전

- 1)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

- 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번역연구계획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 4)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그 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아래의 파일(총 3개)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함.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① "번역연구계획서(연구업적 요약문 포함)" (「붙임3」, 「붙임4」 양식 참조)  
(훈글, MS워드, 또는 PDF 파일)
  - ② 번역대상 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목차 포함) (「붙임5」)  
(스캔하여 PDF 파일 탑재)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③ ②번 내용에 대한 번역 원고 (「붙임6」)  
(훈글, MS워드, 또는 PDF 파일)
    - ※ 위 세 개의 파일은 각각의 파일로 작성하여 탑재함(총 3개의 파일)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3) 대표업적은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업적 중에서 "Ⅲ. 신청자격"에 해당하

는 업적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선택해야 함

- 4) “신청 연구비” 입력 시 200자 원고지 1매당 번역료와 예상원고매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5)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6) 온라인 신청 및 번역연구계획서 파일 등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탑재한 파일의 모든 내용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아래 제출 서류와 함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함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번역연구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받아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2009. 7. 16(목) 14:00 ~ 7. 17(금) 18:00까지
  - 해당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번역연구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 라. 서류제출

- 1) 제출방법 : 별첨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기관장을 통해 재단으로 일괄 우편 제출
- 2) 제출서류
  - 연구진(공동연구원 포함)의 대표적 번역 업적물(출판물) 1종

※ 출판물 내외부에 연구진 이름을 삭제하고 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어 보내 주십시오.

- 번역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 요약문 각 7부 (「붙임2」, 「붙임3」, 「붙임4」)
- 번역대상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사본(목차 포함) 및 번역원고 각 7부 (「붙임5」, 「붙임6」)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제출서류의 내용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탑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한 연구업적 요약문을 번역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번역연구계획서, 연구업적 요약문, 원문사본, 번역원고 순으로 한 부씩 별도로 제본하거나 클립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기한 내 재단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재단 접수일자 기준임. 발송일 기준 아님),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제출기한 : 2009. 7. 23(목) 18:00까지

## ● 신청 및 참여 제한

### 가.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본 명저번역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명저번역지원사업 과제 참여자는 진행 중인 번역연구 결과물의 출판적격 판정 이전 신규과제 신청이 제한됨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또는 결과보고 미제출로 인한 연구비 환수 대상자로서 환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제재조치의 내용(범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신청제한

## 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로 산정하여 아래의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이 불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09.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0.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리더연구지원(우수학자), 기반연구(기초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기반연구(사회과학지정주제-연구자 네트워크), 기반연구(G20국가 모니터링단 시범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인문주간사업의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인력방문연구지원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연구비 지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IV. 심사 및 선정

### ● 심사단계

단계별	심사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 번역업적 및 번역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의	○ 최종 선정과제 확정	명저번역지원위원회

### ● 심사절차 및 내용

####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번역연구업적 및 번역능력의 우수성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번역업적의 수준(20)		○ 번역업적물의 질적 수준
번역능력의 우수성(60)	원문번역의 충실도(20)	○ 원문번역의 정확성 ○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
	가독성과 완성도(20)	○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20)	○ 역주 및 역자해설의 충실성 ○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전공분야와의 관련성(20)		○ 연구업적과 번역대상도서와의 체계적 연관성

#### 다. 제 3 단계 : 종합심의

- 심의주관 : 명저번역지원위원회
- 심의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가. 예비선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기번역 도서 지원 등을 방지
- 나.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다. 협약체결: 재단(이사장), 연구자, 연구기관(장)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 연구비 지급

##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나. 지급시기

구분	1년 과제	2년 과제	지급 대상
1차	3백만원	3백만원	번역권이 확보된 과제 (착수금)
2차	번역연구비의 50%	1년차 번역연구비 전액	1차 중간평가 결과 적격과제
3차	-	2년차 번역연구비의 50%	2차 중간평가 결과 적격과제
4차	번역연구비의 40%	2년차 번역연구비의 40%	번역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출판적격 과제
최종	번역연구비 잔액 지급 (1년 과제: 총 번역연구비의 10% 2년 과제: 2년차 번역연구비의 10%)		출판사의 원고 최종교정 완료 과제

※ 출판사의 최종교정 원고지 매수가 당초의 선정 당시 예상 원고지 매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정산·환수함

## ● 연구비 관리

- 본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동 규정 제22조 등에 의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 하여야 함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번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번역결과보고서의 출판적격 판정 후 출판사에 최종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판 과정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번역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번역대상도서의 한국어번역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때

## VI. 연구과제 사후관리

###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가. 중간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1년과제 : 번역개시 후 6개월 이내 (번역 40% 진행)
- 2년과제
  - 1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후 8개월 이내 (번역 30% 진행)
  - 2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후 16개월 이내 (번역 70% 진행)

##### 2) 제출자료

- 번역연구결과물 (A4용지 출력물) 3부
- 번역연구 중간 개요 보고서 3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정 양식)
- 번역연구과제 원문 또는 사본 3부

##### 3) 제출방법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우편 제출 하되, 번역연구결과물과 번역연구 중간개요보고서는 온라인으로도 탑재해야 함

#### 나. 중간보고서 평가

##### 1) 평가방법 : 전문가 패널 평가

- 주관 : 외부전문가
- 항목 : 원문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및 완성도, 역주 등 참고사항

- 평가 자료를 사전 우송하여 전문가 검토 후 패널 평가 실시
- 2)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 지원중단 결정시 번역연구비 지원 중단 및 대학위탁연구비 회수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가. 결과보고서 제출

- 1) 제출시기 : 당초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2) 제출자료
  - 번역연구결과물 (A4용지 출력물) 3부
  - 번역연구결과 개요보고서 3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정 양식)
  - 번역연구과제 원문 또는 사본 3부
- 3) 제출방법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우편 제출 하되, 번역연구결과물·번역연구 개요보고서·번역연구결과 소개문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도 탑재해야 함

### 나. 결과보고서 평가

- 1) 평가방법 : 전문가 패널 평가
  - 주관 : 외부전문가
  - 항목 : 원문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및 완성도, 역주 등 참고사항
  - 평가 자료를 사전 우송하여 전문가 검토 후 패널 평가 실시
- 2)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출판적합 여부를 결정함
  - ※ 지원중단 결정시 번역연구비 지원 중단 및 대학위탁연구비 회수

### 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번역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 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번역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연구결과물 제출 및 출판

### 가. 연구결과물 제출

1) 제출시기 : 최종 번역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1년 이내에 출판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분야별(동양/서양서)로 각 2개씩 지정하는 출판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출판

2) 제출자료 : 최종 원고파일

### 나. 연구결과물 출판

1) 번역도서의 판권

○ 초판 출판일로부터 향후 5년간 국가(한국학술진흥재단)가 소유하고, 그 이후 번역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e-book 출판 포함)

2) 연구결과물 사사표기 :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KRF-2009-○○○-○○○○○○○).”

## ● 연구성과 관리

- 연구성과 Follow-up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VII. 기타사항

### ● 간접비 지급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137-7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5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인문학지원팀: Tel (02) 3460-5575 / 김혜수([khs001017@krf.or.kr](mailto:khs001017@krf.or.kr))  
Fax (02) 3460-5579

○ 전산관련 문의(온라인 신청 등)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2~7 Fax (02) 3460-5549



【붙임 2】

※ 접수번호	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 200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연구계획서

(사업명 :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 과제명	원문 :			
	영문 : 영역본을 통해 보완하실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번역연구 책임자	소 속		학과(부)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연락처	연구실:(    )                      긴급연락처:(    )		
번역연구 형태	단독번역(    ), 공동번역(    )		공동연구원 수	명
신청번역 연구비	1년차 :	천원	원고매수 (예상)	매
	2년차 :	천원		
	합계 :	천원		

- ☞ 온라인 파일 탑재시 현재 페이지는 제외하고 [붙임 3]부터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시 번역연구계획서 7부중 겉표지(현재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6부는 겉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붙임 3】

# 200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연구계획서

(사업명 :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 과제명	원문 :				
	영문 : 영역본을 통해 보완하실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원문 서지사항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사용언어
영역본 서지사항 (영역본을 통한 보완시)	역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기타
번역연구형태	단독번역(    ), 공동번역(    )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번역 연구비	1년차 :            천원	원고매수 (예상)			매
	2년차 :            천원				
	합계 :            천원				

- ☞ 연구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번역연구비는 재단의 연구비 산정·집행지침과는 무관한 순수 번역연구 활동비로서의 연구비이므로 번역과제의 분량 및 언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 ~ 12,000원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단, 연구비를 과다 산출한 경우에는 연구비가 삭감되거나 과제선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정연구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계획서

- ※ 연구계획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5쪽 내외로 기술하십시오.
- ※ 연구계획서 (붙임 3, 붙임4)의 용량은 10Mb 이하로 한정됩니다.
- ☞ 본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명시하실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번역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원저자 및 번역대상과제 소개, 해당 도서의 번역 필요성, 선행연구와 번역 연구계획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 2. 번역연구 추진 계획 및 방법

- 번역추진계획의 구체적 일정, 공동번역의 경우 번역연구 분담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술하십시오)

- 국내·외 번역연구동향 또는 번역연구배경
- 번역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안 등
- 공동 번역연구수행의 필요성 (공동번역의 경우)
- 기타 번역연구계획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붙임 4】**

<b>신청과제</b> <b>연구참여 구분</b>	<b>연구책임자 [ ]</b> <b>공동연구원 [ ]</b>	<b>요약문 번호</b>	
<p>※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요약문 번호란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들의 업적요약문을 일련번호로 기재.</p> <h2 style="text-align: center;">연구 업 적 요약 문</h2>			
<b>업적 형태 구분</b>	저서[ ]   역서[ ]   학술지[ ]   외국특허[ ]		
<b>연구업적 참여자 수</b>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b>연구업적 제목</b> (논문, 저·역서, 특허)			
<p>■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저역서의 경우 서지사항 및 내용 등을 기재]                  [논문의 경우 게재 학술지명, 게재일, 초록 등을 기재]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내용 등을 기재]</p>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붙임 5】**

**번역도서 원문사본(목차 포함)을 스캔한 후 PDF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 <붙임 5>는 별도의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Mb 이하)

**【붙임 6】**

**〈붙임 5〉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번역 원고를 작성하여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6〉은 별도의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Mb 이하)**

## 【붙임 7】

# 2009년도 명저번역지원 FAQ

### 1.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다년과제 선정비율 제한 폐지

양질의 다년과제 신청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번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과제 지원비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다년과제 선정비율을 폐지하였습니다.

#### ▶ 연구비 지급시기 변경

번역연구과제가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후에도 출판 과정에서 연구자의 참여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최종 교정 완료 후 연구자에게 연구비 잔액(전체 연구비의 1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지급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 ▶ 출판사 선택권 부여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도서를 적시에 출간하기 위하여 분야별(동양서/서양서) 각 2개 출판사를 공모·지정하여 연구자가 선택 출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 ▶ 기존 지원중단 과제 재공모

기존에 중간·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지원중단된 과제를 지정도서 목록에 포함하여 재공모합니다. 단, 해당 과제의 기 수행자는(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신규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번역지정도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정됩니까?

#### ▶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하기 위해 재단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번역이 필요한 고전과 학술명저에 대한 추천을 받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추천된 도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번역대상 지정도서로 선정됩니다.

재단은 아래 범주의 도서들을 번역지정도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1)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 및 사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동서양의 명저
- 2)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려운 학술서 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도서
- 3)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

4) 국내외 학술명저 중 이미 번역되었으나 오역이나 불완전한 번역 등을 사유로 재번역이 필요한 도서

5) 2년 내 번역 가능한 도서

※ 단, 우리 고전의 번역은 기초연구과제지원에서 지원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3. 지정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자유도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2004년까지는 자유도서에 대해서도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2005년도부터는 번역지정과제를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유도서에 대해서는 신청받지 않고, 지정도서에 한하여 공모를 합니다.

4. 번역연구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 예년의 번역연구비는 개인번역연구의 경우는 2천만원, 공동번역연구의 경우는 3천5백만원으로 제한했으나 2002년도부터는 번역연구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번역도서를 출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신청제한액을 폐지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번역대상도서의 언어·내용의 난이도 및 분량 등을 고려하여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 ~ 12,000원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때 번역연구비는 재단의 연구비 산정·집행지침(연구보조원 수당, 여비 등)과는 무관한 순수한 번역연구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박사학위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최종학위와 상관없이 학술진흥및학자급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독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이거나 혹은 4인 이하의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1편 이상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분야가 기초학문분야로 되어 있는데, 인문사회분야만 신청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신청분야는 인문사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문·사회·자연·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서 지정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는 신청 가능합니다.

7.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번역연구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선정된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재단의 정책방향에 의거 최고의 번역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번역연구비는 그 평가결과에 의거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 ▶ 1년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전체번역의 40%내외, 역주 등을 포함한 출판가능한 상태)는 번역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는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의 전문가에 의한 집중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과제의 경우는 번역연구개시 8개월 이내에 1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1년 4개월 이내에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계속지원, 지원유보, 지원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원유보 결정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여 제출된 수정보고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책정된 연구비에서 기지급한 연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 8. 번역 후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인세는 어떻게 지급되니까?

- ▶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번역과제는 재단에서 지정한 출판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 동서양학술명저 번역총서”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 ▶ 원저작권자와의 한국어번역권 체결에 대한 문제는 재단에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번역권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도서를 추천하실 때와 번역지원을 신청하실 때 도서의 서지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고, 선정되신 후 원저작권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0부까지는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2,000부 이상 발행할 때 로열티가 없는 경우는 도서 정가의 10%, 로열티가 있는 경우는 12%에서 로열티를 제한 인세를 지급합니다.